# 겸직금지 및 제한법제 운용의 합리성과 적정성 및 입법모델 연구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겸직금지 및 제한법제 운용의 합리성과 적정성 및 입법모델 연구 

강 현 철

# 겸직금지 및 제한법제 운용의 합리성과 적정성 및 입법모델 연구 

Study on Legal Model and Reasonableness and Adequacy of Prohibition of Concurrent Offices System

연구자 : 강현철(연구위원)<br>Kang, Hyun-Cheol

$$
\text { 2011. 10. } 31 .
$$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입법기준의 명확화○ 법령의 근거와 부과기준 등의 입법모델 분석을 통한 입안기준 정비

○ 통계분석 및 조사방법을 통한 연구성과 도출
$\square$ 연구범위와 방법
○ 이론적 연구: 개념 및 본질에 관한 사항
○ 통계분석 및 조사분석 연구

## ․ 주요 내용

겸직금지 및 제한에 관한 일반론○ 개 념

- 어떤 직위 또는 신분에 있는 자에게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동 시에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
- 해당 업종의 성격상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업무의 공정성을 해 칠 우려가 있을 경우

O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단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
○ 목적은 업무규제의 성격은 물론 업무독립성의 성격을 동시에 가짐

- 공익과 사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법리 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 제한의 정도도 필요최소한의 원칙에 벗어나서는 안됨법적 성격
○ 겸직을 금지하는 직을 열거하는 방식이 일반적
○ 포괄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하는 규정방식

○ 겸직금지 및 제한의 내용과 그 정도 및 공공성과 독립성의 정도 등에 따라 그 규정방식을 열거형식 • 포괄금지형식 • 동시규정형식
$\square$ 공무원에 관한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금지
○ 공무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금지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서 규정

○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정을 두려면 해당 법률에서 별도의 특례규정을 둠선거직 공무원에 규정된 겸직금지

○ 선거직 공무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에 대하여 대통령과 국회의 원 등에 관한 사항은 헌법상의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음.

○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자 치에 기초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은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서 정하여 논란을 불식할 필요성 이 제기
$\square$ 공공단체 임직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포괄적인 임직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square$ 공적 조합•특수법인 임직원의 겸직금지

○ 일반적인 겸직금지 및 제한의 법리보다는 법률에서 특정한 지 위를 동시에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식으로 규정
$\square$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 임직원의 겸직금지

○ 사적 영역의 업무수행자에 대하여 특수한 업무의 수행이라는 공적 업무적 관점으로 접근자격자 관련 겸직금지

○ 이해상충 등의 이유로 해당 업무의 수행과 양립하기 어렵거나 업무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경우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의 분석

○ 국회법상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 국회조직법상의 겸직제한
-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 선출직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의회의원
- 교육감과 교육위원

○ 공무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 사외이사와 겸업금지의무
○ 공공기관 임직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 III. 기대효과

$\square$ 겸직금지 및 제한법제와 영리목적 영업의 금지에 관한 입 법기준과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관련 법제의 입법모 델을 제시

주제어 : 겸직금지, 겸직제항, 영리목적 영업금지, 표준입법모델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Clarification of Legislative standards- Maintenance of legislative standards with analysis of legislative model
- Performance with Statistical Analysis and Research MethodsResearch Scope and Method
o Theoretical Study : Concept and nature


## П. Current Legal System and Its Problems

$\square$ Generalizations about Prohibition of Concurrent Offices

- Concept
- Party status in any position or any other status or identity at the same time to deny them that
- Concurrent position nature of the sector with other business harm the fairness of this task if you have concerns
- The legal nature and Method of determining rates
- Enumerated type
- Inclusive method
- Simultaneous method


## III. Legal Improvements

Concurrent position ban on government officials and Banned commercial business- Concurrent position ban on government officials and Banned commercial business that Prescribe Public Service Act Article 64 and Local civil service Act Article 56
- Special provisions of the law, keep a separate

Prohibition set forth in Concurrent position elected government officials

- Matters relating to the President and Parliament in general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of members of council regulations on Concurrent position and Based on local education authorities and the Board of Education Superintendent should clarify the law
$\square$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of the Concurrent position public organizations employees
- Article 37 of the Act on public organizations to operate a Concurrent position employees in Group comprehensive regulatory matters is the limit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of Concurrent position public employee combinations and special corporation
- At the same time a certain position in law is to prohibit Concurrent positionTo perform specific tasks in the private sector Concurrent position employees prohibited
- The ban on Concurrent position special mission is to target the public serviceQualification Concurrent position ban on
- Undermine the fairness of work due to a conflict of interest

2) Key Words : Prohibition of Concurrent Offices, Legal System, Legal Improvements, legislative standards, Prohibition of commercial business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I. 서 론 ..... 2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1
2. 연구범위와 방법 ..... 22
․ 겸직금지 및 제한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25
3. 겸직금지 및 제한의 의의 ..... 25
(1) 의 의 ..... 25
(2) 영리업무의 금지와 겸직허용 규정 ..... 26
4. 겸지금지 및 제한의 법적 성격 ..... 26
(1) 공무원에 관한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금지 ..... 27
(2) 선거직 공무원에 규정된 겸직금지 ..... 28
(3) 공공단체 임직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 ..... 29
(4) 공적 조합 - 특수법인 임직원의 겸직금지 ..... 30
(5)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 임직원의 겸직금지 ..... 31
(6) 자격자 관련 겸직금지 ..... 31
III. 겸직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현행법제 실태분석 ..... 33
5. 공무원에 관한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금지 ..... 33
(1) 감사원법 제9조 겸직 등의 금지 ..... 33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겸직 등의 금지 ..... 33
(3)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 20 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 34
(4) 교육공무원법 제19조 겸직금지 ..... 34
(5)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 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 35
(6)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 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기준 등 ..... 35
(7)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35
(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6 조 겸직 허가 ..... 36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7 조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 36
(1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0 조 위원의 겸직금지 ..... 37
(11) 국가정보원법 제 8 조, 제 10 조, 제 18 조 겸직금지 ..... 37
(12)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 16 조 회계기관의 겸직, 시행규칙 제116조 겸직의 금지 ..... 37
(1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 38
(14)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물품관리관과 물품 출납공무원의 겸직 금지 ..... 38
(15) 군예식령 제 50 조 겸직자에 대한 의장례 ..... 38
(16)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 39
(1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겸직등의 금지, 제34조 겸직의 제한 ..... 39
(18) 문화예술진흥법 제26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 39
(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9조 겸직과 파견요청 ..... 40
(2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겸직금지 등 ..... 40
(21) 법원공무원규칙 제89조 겸직허가 ..... 40
(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시행령 제 14 조 위원의 겸직금지 ..... 40
(23) 사법보좌관규칙 제31조 재보직 특례 및 겸직 ..... 41
(2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32조 겸직허가 ..... 41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1 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제80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 42
(2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겸직금지 등 ..... 42
(27)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5조 겸직 ..... 42
(28) 조정위원규칙 제 2 조의 3 상임 조정위원의 겸직제한 등 ..... 43
(29)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 14 조 공무원 등의 교수 요원 겸직임용 ..... 43
(30)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43
(3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겸직 허가 ..... 44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 44
(3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 10 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 44
(34)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01조 겸직허가 ..... 45
(35) 헌법재판소법 제 14 조 재판관의 겸직 금지 ..... 45
(36)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1조 교수요원의 겸직임용 ..... 45
(37) 공탁법 제24조 공무원의 겸직 ..... 46
(38) 교육공무원법 제18조 겸임 ..... 46
6. 선거직 공무원에 규정된 겸직금지 ..... 47
(1) 국회법 제 20 조 의장 • 부의장의 겸직제한, 제 29 조 겸직 ..... 47
(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겸직의원의 수당 ..... 48
(3)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8조 겸직금지등 ..... 48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 겸직 등의 금지 ..... 48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 겸직 등의 금지, 제 23 조 겸직의 제한 ..... 49
(6) 지방자치법 제 35 조 겸직 등 금지 ..... 50
(7) 지방자치법 제96조 겸임 등의 제한 ..... 51
7. 공공단체 임직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 ..... 5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7 조, 시행령 제 25 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 51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16 조 겸직, 시행령 제6조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7조 겸직해제등 ..... 52
(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4조 겸직, 시행령 제9조 겸직교원 ..... 53
(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겸직, 시행령 제 2 조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등, 제3조 겸직해제 ..... 54
(5)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5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 55
(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임 • 직원의 겸직제한 ..... 55
(7)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 겸직 ..... 55
(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36 조의 6 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 제 36 조의 7 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시행령 제36조의7 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 ..... 56
(9) 재외동포재단법 제 11 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56
(1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겸직, 시행령 제 10 조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 57
(1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9 조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겸직 허용 ..... 57
(1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 10 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 58
(1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 11 조 직원의 겸직제한 ..... 58
(14)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 58
(15) 한국마사회법 제3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 58
(1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 15 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 58
(17)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제 5 조 파견 및 겸직에 따른 기본급여 및 수당의 지급 ..... 59
(18)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13 조 직원의 겸직제한 ..... 59
8. 공적 조합•특수법인 임직원의 겸직금지 ..... 60
(1) 공무원연금법 제 12 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 60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임 •직원의 겸직제한 ..... 60
(3)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 60
(4) 국민연금법 제37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 60
(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 25 조 겸직금지 의무등 ..... 61
(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 24 조 겸직금지 의무 등 ..... 61
(7)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 61
(8) 무역보험법 제5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 62
(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13 조 임원 등의 겸직 금지 ..... 62
(10) 법률구조법 제31조 공무원의 겸직근무, 시행령 제9조 겸직공무원의 수당 등 ..... 62
(11) 별정우체국법 제 10 조의 3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제 16 조의 6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63
(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0 조 교감의 겸직 ..... 63
(1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 16 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 63
(14)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임원의 겸직금지 ..... 64
(15) 산림조합법 제41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등 ..... 64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21 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64
(17)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 11 조 겸직, 시행령 제 13 조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 14 조 겸직해제 등 ..... 65
(1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 12 조 겸직, 시행령 제 12 조 겸직교원 요청절차, 제 13 조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 14 조 겸직해제 등 ..... 65
(1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9조 겸직 금지, 시행규칙 제6조 상임이사의 겸직승인 신청 ..... 66
(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3조 임원의 겸직금지 ..... 67
(2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15 조의 2 임직원의 겸직제한등 ..... 67
(2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 67
(23) 신용보증기금법 제19조 겸직금지 의무 등 ..... 68
(24) 염업조합법 제 25 조 임원의 겸직금지 ..... 68
(25) 예금자보호법 제 17 조 겸직금지의무등 ..... 68(26) 의약품 물류협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제 40 조 임원의 겸직금지68
(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2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 69
(28)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 27 조 임원의 겸직금지, 시행령 제 10 조의 9 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 69
(29) 정부법무공단법 제 14 조 겸직제한 등 ..... 69
(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조 공무원의 겸직 금지, 제62조 임원의 겸직금지 ..... 70
(31) 지방공기업법 제6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 70(3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 13 조 겸직제한, 제 14 조겸직, 시행령 제 11 조 겸직 교육공무원의 보수 등,제 12 조 사립학교교원의 겸직 등, 제 13 조 겸직의 해제70
(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 10 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 72
(3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 72
(35) 한국수출입은행법 제 13 조 임원의 겸직 제한 ..... 72
(36) 한국은행법 제 20 조 겸직 등의 금지, 제 41 조 겸직제한, 제 46 조 감사의 겸직제한 등 ..... 72
(37)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 18 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 73
(38) 한국투자공사법 제28조 겸직금지의무 등 ..... 73
(39) 한국환경공단법 제 13 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 73
9.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 임직원의 겸직금지 ..... 74
(1)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시행령 제 18 조 임원의 겸직제한 등 ..... 74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안전 관리자의 겸직 허용 ..... 7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 조의 2 교육 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시행령 제 11 조의 2 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 기관의 범위 ..... 80
(4) 보험업법 제 14 조 임원의 겸직 제한, 시행령 제 20 조 임원의 겸직 제한 ..... 81
(5) 부품 •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 82
(6) 사립학교법 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 82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겸직 허용 ..... 82
(8) 상호저축은행법 제 37 조의 4 임원의 겸직 제한 ..... 83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임원의 겸직 금지 ..... 84
(10) 암관리법 제 35 조 직원 겸직, 시행령 제 17 조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제18조 겸직해제 ..... 84
(11) 은행법 제 20 조 임원 등의 겸직 제한 ..... 85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8조 겸직 금지, 시행령 제 343 조 겸직금지 대상 법인 ..... 85
(1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40 조 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 86
(1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 15 조 임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의 제한 ..... 86
(15) 중소기업은행법 제28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 87
(16)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시행령 제 17 조 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 ..... 87
(17) 상법 제 198 조 사원의 경업의 금지, 제 397 조 이사의 경업의 금지, 제 411 조 겸임금지 ..... 88
10. 자격자 관련 겸직금지 ..... 89
(1) 공증인법 제6조 겸직 금지 ..... 89
(2) 변호사법 제 38 조 겸직 제한 ..... 89
(3)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14 조 겸직 금지, 시행규칙 제9조 겸직 허용 전문과목 ..... 90
(4)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겸직 금지 ..... 90
(5)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 14 조 겸직 금지 ..... 90
(6) 세무사법 제 16 조 공무원 겸임 및 영리업무종사의 금지 ..... 90
IV.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의 분석 ..... 93
11. 국회법상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 93
(1) 국회조직법상의 겸직제한 ..... 93
(2) 국회의원 ..... 93
12. 지방자치단체 선출직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 94
(1) 지방자치단체의 장 ..... 94
(2) 지방의회의원 ..... 95
(3) 교육감과 교육위원 ..... 97
13. 공무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 98
14. 사외이사와 겸업금지의무 ..... 101
15. 공공기관 임직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 102
참 고 문 헌 ..... 103
【부 록】
부록 : 겸직금지 관련 법령 ..... 107

## I. 서 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일반적으로 겸직 금지 또는 제한이란 어떤 직위 또는 신분에 있는 자에게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동시에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 당 업종의 성격상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 가 있을 경우에 두게 된다. 대체로 공무원 등 공공성이 강한 지위• 신분의 직에 있는 자에게 그 직의 독립성. 공공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직을 겸할 수 없도록 법률로써 겸직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으 로 본래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

겸직금지 또는 제한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 를 규정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겸직금지 또는 제한 을 통한 공익과 침해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범위에 거쳐야 하며, 그 제한의 정도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 용을 침해할 수 없음은 헌법상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마90 결정
【행정사법 제 35 조제 1 항제 1 호 등 위헌확인】

직업선택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으되, 그 제한의 방법은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직업선택에 대한 침해는, 그 침해가 공익상의 충분 한 이유로 정당화되고 또한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비로소 직업의 자유와 조 화될 수 있다.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특정한 직위나 신분에 대해서 이를 완전 히 금지하는 경우와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되 감독자의 허가를 받 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영리업 무에 한정하여 금지하는 유형이 있다. '영리업무 금지’란 어떤 직위 또는 신분에 있는 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나 사업에 종사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 • 직원, 특수법인의 임 - 직원 등에게 업무에 충실하고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 하여 두는 규정으로서 겸직 금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겸직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영리업무 금지 규정을 동시에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겸직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은 입안기준과 입법모델 에 따라 규율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러한 기준과 원칙에서 벗어나 과 도한 겸직금지의 규정의 두거나 제한규정을 남용하는 입법례가 늘어 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입법적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과잉 된 규정 또는 남용된 입법례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최근 겸직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과 교육감, 공무원, 사외이사 등에 대한 금지 와 제한의 합리적 기준과 대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겸직금직 및 제한에 관한 개별단위의 공통적 입법모델의 제시는 물론 현재 정치적•사회적으로 논쟁되고 있는 각 분야별 겸직 금지와 제한의 적정성에 관하여 입법론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입법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 연구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겸직금지 또는 제한이라는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행정적 규제에 대하여 그 범위의 적절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근 거로 입법론적으로 제도적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겸직금지

또는 제한의 정확한 개념과 그 범위를 획정하여 그 법적 성질을 명확 히 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과 범위에 비추어 각 종류별 • 영역별 겸 직금지 또는 제한의 류형화를 통한 규제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최근 사 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각종 금지와 제한의 적정성에 관하여 검토하 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이론적 문헌분석 연구는 물론 법령전수조사를 통한 통계학적 분석방법 등을 통하여 연구성과의 객관화와 중립성을 확보 하고자 한다.

## ․ 겸직금지 및 제한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1. 겸직금지 및 제한의 의의

## (1) 의 의

겸직금지 및 제한은 공무원과 공공단체의 임직원 등 법령에 의하여 공공성이 강한 지위나 신분에 있는 자가 그 직의 업무상 독립성과 공 공성 또는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직무범 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1) 즉,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단체의 임직원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은 물론 법원•국회 등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자에 대하여는 법률 에서 일반적으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공사 등 공공단체와 관련된 법률에서도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사적 기관 중 공적업무를 대행하거나 공적 성격이 강한 업 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공공단체의 임직원에 준하는 금지 또는 제한 을 두고 있는 법률의 규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겸직금지 및 제한의 목적은 업무규제의 성격은 물론 업무독립성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공공성이 강한 업무의 공정성을 위하 여 겸직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적 업무의 수 행자에게 다른 업무의 겸직과 제한에 대한 업무의 중복을 피하도록 하여 그 업무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 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겸직금지규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경 제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법률에 그 금지와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

[^0]다. 이는 위임입법의 원칙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제한의대표적인 경우 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금지와 제한은 금지와 제한에 따른 공익과 사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 제한의 정도도 필요최소한의 원칙에 벗 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2) 영리업무의 금지와 겸직허용 규정

영리업무의 금지에 관한 사항은 겸직금지와 동일한 취지의 입법방 안의 하나로서 관련 당사자가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동일한 입법적 사안으로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겸직허용에 관한 사항은 금지와 제한과는 달리 겸직이 허용되는 범 위를 정하도록 입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겸직금지와 제한이 일반적인 공적업무 수행의 원칙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과도한 사적 이익추구를 제한하지만, 공무원과 공공단체 임직원의 전문성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과 사회적 필요를 충족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교육 등 비사익적 활동 등에 대하여는 오히려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 는 것이 활동의 적극성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금지와 제한규 정과 더불어 허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겸직허용의 규정은 그 범 위와 정도를 규정하는 포지티브한 입법방안이다.

## 2. 겸지금지 및 제한의 법적 성격

겸직금지 및 제한의 규정방식은 겸직을 금지하는 직을 열거하는 방 식이 일반적이나, 포괄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방식을 취하거나 전자와 후자를 함께 규정하는 방 식을 취하기도 한다. 즉, 겸직금지 및 제한의 내용과 그 정도 및 공공

성과 독립성의 정도 등에 따라 그 규정방식을 열거형식•포괄금지형 식 • 동시규정형식으로 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입안규정에는 이러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고, 열거와 포괄금지, 동시규정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분리하여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입법평가 또는 법리분석 등의 객관적인 논의를 통한 기준을 명확하 게 제시하는 것이 입법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열거형식 을 취하고, 공공기관 중 대민업무와 영업활동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 의 경우에는 포괄금지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시규정형식 은 영업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하는 준공공기관 성격의 법인 등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영리성에 대한 우려를 법률규정으로 담 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리목적의 직을 금지하는 경우 는 영리가 아닌 목적의 직의 겸직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으며, 본래의 직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대부분 소속 기관장의 승인 또 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 (1) 공무원에 관한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금지

공무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금지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지방 공무원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없으면 공무원은 영리업무와 겸직이 금지되며, 겸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받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정을 두려면 해당 법률에서 별 도의 특례규정을 둘 수 있다.

「감사원법」
제 9 조 (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행정부서의 공무원의 직
3．이 법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4．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 （2）선거직 공무원에 규정된 겸직금지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행정각부의 장 등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 고，그 밖에 개별 법률에서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이 일정한 범위의 직위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선거직 공무원의 겸직 금지 및 제한에 대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관한 사항은 헌법상 의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다．하지만，지방자치단체와 관 련된 선거직의 경우에는 그 법률적 지위와 중립성과 독립성의 정도에 따라 겸직관련 규정이 별도로 정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점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자치에 기초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은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서 정하여 논란을 불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법」
제29조（겸직）（1）의원은 정치활동 또는 겸직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있다．
1．「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다만，「국가공무원 법」제 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대통령－헌법재판소재판관－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지방의회의원
3．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 함한다）의 임 • 직원

5．「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의 임• 직원
6．「정당법」제 22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 （3）공공단체 임직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최근의 입법통합화와 체계화의 일환으로 제정 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7 조에서 포괄적인 임직원의 겸 직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기준과 원칙에 따르면 될 것이다．이 규정은 공공단체 임직원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 편적인 기준으로서 공공성과 독립성에 따른 엄격규정을 적용하는 경 우에는 별도로 법률의 규정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며，이 규정보다 완화된 규정의 법률제정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1）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 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3）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시행령 제 25 조（임직원의 겸직제한）법 제 37 조제 3 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 25 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 (4) 공적 조합•특수법인 임직원의 겸직금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조합과 개별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독립성 보장과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공적 지위 등을 겸직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조합과 특수법인의 업무가 대민업무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는 점에서 겸직이 허용될 경우 업무와 관련된 비리는 물론 책임성의 문제도 동시에 발생할 가 능성을 염두에 두는 입법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일반적인 겸직금지 및 제한의 법리보다는 법률에서 특정한 지위를 동시에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1) 조합장과 이사는 그 지역농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2) 지역농협의 임원은 그 지역농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3) 지역농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4)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 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5)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조합장과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해당 지역농협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5）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 임직원의 겸직금지
은행，사립학교 등과 같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적 영역의 업무 수행자에 대하여 특수한 업무의 수행이라는 공적 업무적 관점으로 접 근하여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나 기업의 건전한 경영 확 보 및 고객과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거래의 안전보호 등의 이유로 다른 법인 등의 임직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 법」
제 20 조（임원 등의 겸직 제한）（1）은행의 임직원은 한국은행，다른 은행 또는「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이하＂은행지주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37조제 5 항에 따른 자은행（子銀行）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2．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3．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임 원 이 되는 경우
（2）은행의 상임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3．제 37 조제 2 항에 따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자격자 관련 겸직금지

일정한 자격자에게 겸직금지 및 제한과 영리업무 금지에 관한 사항 을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이는 사적 영역인 민간자격자에게 이 규정을 두는 것은 이해상충 등의 이유로 해당 업무의 수행과 양립

하기 어렵거나 업무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 다．즉，자격자에 대한 겸직금지는 합리적이고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정당화 사유가 명확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따라서 자격자의 경 우에는 일반적인 금지 및 제한이나 영리업무금지의 규정을 둘 필요는 없으며，공익상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또한，휴업한 경우에는 자격자라는 이유로 일반적 금지를 하는 것은 적절한 규제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관련규정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방안이다．현행 법률상 자격자에게 관련 규정을 두 고 있는 경우는「변호사법」，「세무사법，「관세사법」，「공증인법」등이 있다．

## 「변호사법」

제38조（겸직 제한）（1）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 다．다만，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 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 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 는 것
（3）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 1 항과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II．겸직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현행법제 실태분석

## 1．공무원에 관한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금지

（1）감사원법 제9조 겸직 등의 금지

제 9 조（겸직 등의 금지）감사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행정부서의 공무원의 직
3．이 법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4．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 감사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
감사위원이 겸직가능한 직은 공사직 무보수 명예직에 한정
（2）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 13 조 겸직 등의 금지

제 13 조（겸직 등의 금지）（1）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職）을 겸하거나，공 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소속 기관장의 허 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제 1 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국가공무원법」제 64조제2항 및「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2항을 준용한다．
［참고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1）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제 1 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 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1)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제 1 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 20 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제20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심사위원회2)의 위원장과 상임위원 은 소청심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학교법인의 임원
2. 각종 교원단체의 임 원
3. 그 밖에 소청의 당사자중 그 일방의 이익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
※ 대통령령에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

- 이해당사자의 참여제한이라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 관련 겸직금지 와는 다름
(4) 교육공무원법 제 19 조 겸직금지

제19조(겸직 금지) 각급학교의 감독청에 재직하는 사람은 대학의 장 또는 부 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또는 교학처장), 교무과 장, 학생과장, 교장, 교감, 원장 또는 원감 등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
2)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 1 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5）교육공무원법 제 19 조의 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1）「고등교육법」제14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 • 지 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 3 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
> （2）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 •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 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기준 등

제 7 조의 5 （대학교원의 사외이사겸직허가기준 등）（1）대학의 장은 법 제 19 조 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겸직허가를 하고자 할 때 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허가의 필요성
2．허가기간의 적절성
3．허가대상기업의 적합성
4．그밖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교육 • 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겸직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 （7）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1）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 할 수 없다．
(2) 제 1 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 원규칙, 헌 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겸직 허가

제 26 조(겸직 허가) (1) 공무원이 제 25 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 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 1 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3) 제 1 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 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 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렁 제57조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제55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 - 보수에 관한 공사등 당해 계약의 이행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 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 억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제 54 조제 1 항제 1 호에 규정한 공사계약의 경우
5. 제 55 조제 7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 음하는 경우

## （10）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0 조 위원의 겸직금지

제 10 조（위원의 겸직금지）（1）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 무를 할 수 없다．
1．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
3．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2）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11）국가정보원법 제 8 조，제 10 조，제 18 조 겸직금지

제 8 조（겸직 금지）원장 •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 10 조（겸직 직원）（1）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 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겸직 직원의 원（原）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 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겸직 직원을 전보（轉補）발령하려면 미리 원장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4）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18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1）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2）제 1 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원장이 정한다．
（12）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 16 조 회계기관의 겸직， 시행규칙 제 116 조 겸직의 금지

시행령 제 16 조（회계기관의 겸직）정원의 과소로 인하여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단서 및 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과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 및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동일인이 겸하게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 116 조(겸직의 금지) 수입금출납공무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원의 직무는 동일인이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 정원의 과소로 인하 여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1) 군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부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제 1 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 정」제 25 조를 적용한다.
(14)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물품관리관과 물품 출납공무원의 겸직 금지

제 6 조(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공무원의 겸직 금지) 물품관리관(대리물품관 리관을 포함한다)과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및 대리물품출 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같은 사람이 겸할 수 없다.

## (15) 군예식령 제50조 겸직자에 대한 의장례

제 50 조(겸직자에 대한 의장례) 2 개이상의 직위를 겸하는 자에 대하여 의장 례를 행할 때에는 군인의 경우에는 참모총장급이상의 직위를 겸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의 현계급에 대한 의장례의 격식으로 행하고, 민간인의 경우 에는 그의 상위직위에 해당되는 의장례의 격식으로 행한다.
(16) 군인복무규율 제 16 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제 16 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 - 반사 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 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1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겸직등의 금지, 제 34 조 겸직의 제한

제 9 조(겸직등의 금지) 위원장 - 부위원장 및 제 4 조제 1 항제 5 호의 위원은 재 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 원의 직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 - 직원의 직.
4. 기타 보수를 받는 직

제 34 조(겸직의 제한) 원장 - 부원장 • 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외 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18) 문화예술진흥법 제 26 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제26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1) 위원장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위원 장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 한 경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9조 겸직과 파견요청

제 9 조(겸직과 파견요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9조제4항 및 제31조 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처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 게 하거나 파견요청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겸직 또는 파견대상 공무원의 종류 • 직급 및 인원수를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2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겸직금지 등

제 9 조(겸직금지 등) (1) 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 1 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1) 법원공무원규칙 제89조 겸직허가

> 제89조(겸직허가) (1) 공무원이 제 88 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 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시행령 제 14 조 위원의 겸직금지

제 17 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 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 • 직 원

시행령 제 14 조(위원의 겸직금지) 법 제 17 조제 2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 -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 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 (23) 사법보좌관규칙 제31조 재보직 특례 및 겸직

제34조(재보직 특례 및 겸직) (1)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직위로 전 보된 법원공무원을 다시 사법보좌관으로 보할 경우에는 법원공무원중앙 인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 33 조제 2 항제 2 호 • 제 3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
2. 제 33 조제 2 항제 4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로서 무 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 이외의 처분과 판결을 받은 경우
(2) 사법보좌관은 다른 직위를 겸직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법원장은 인 력 수급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다른 직 위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3) 소속법원장은 사법보좌관을 재보직하거나 겸직하게 할 경우 법원행정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32조 겸직허가

제232조(겸직허가) (1) 공무원이 제 231 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 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 1 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제 1 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임용권자를 말한다.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1 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제 80 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제11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1)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화진흥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수를 지급하고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영화진흥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80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2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겸직금지 등

제 9 조(겸직금지 등) (1)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 1 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5조 겸직

제 5 조(겸직) (1) 주재무관은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무관을 겸할 수 있다.
(2) 주재무관은 제 1 항에 따른 다른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그 공관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제4조 단서 를 준용한다.
（28）조정위원규칙 제 2 조의 3 상임 조정위원의 겸직제한 등

제 2 조의 3 （상임 조정위원의 겸직제한 등）（1）상임 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상임 조정위원은「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 이외에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없다．다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행 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있다．
1．「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2．상임 조정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수임한 사건
（3）법관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상임 조정위 원에 이를 준용한다．
（29）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 공무원 등의 교수 요원 겸직임용

제 14 조（공무원 등의 교수요원 겸직임용）（1）시•도지사와 교육감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관련 분야 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겸직임 용할 수 있다．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 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제 1 항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겸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0）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1）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제 1 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겸직 허가

제 11 조(겸직 허가) (1) 공무원이 제 10 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 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 1 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제66조(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제56조에 따른 감독의 직무와 제64조에 따 른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검사에서 감독을 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 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 - 보수에 관한 공사 등 해당 계약의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제 56 조제 1 항제 1 호에 규정된 공사계약의 경우
5. 제6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3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 10 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 10 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1)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 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2)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34)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 101 조 겸직허가

제 101 조(겸직허가) (1) 공무원이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되 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 를 받아야 한다.
(2) 제 1 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35) 헌법재판소법 제 14 조 재판관의 겸직 금지

제 14 조(재판관의 겸직 금지)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 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국회•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
3. 법인 - 단체 등의 고문 - 임 원 또는 직원의 직
(36)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 11 조 교수요원의 겸직임용

제 11 조(교수요원의 겸직임용) (1)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해당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미리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제 1 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수요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예산의 범위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겸직허용의 경우에 해당
[참고조문]
시행령 제21조(교수요원의 운영 등) (1) 교육훈련기관에는 교육훈련계획의 수 립, 강의 및 교과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2）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을 강의교수•교육운영교수 및 실기교 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3）교육훈련기관에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교재편찬，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초빙교수 또는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4）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법 제 1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7）공탁법 제 24 조 공무원의 겸직

제 24 조（공무원의 겸직）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소속 공무 원을（공탁금관리）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 겸직허용의 경우에 해당

## （38）교육공무원법 제18조 겸임

제 18 조（겸임）（1）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교육공무원과 다른 특 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 기 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 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겸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제9 조 또는「초•중등교육법」제21조제1항•제2항 및「고등교육법」제16조 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 겸임이 허용되는 범위

## 2．선거직 공무원에 규정된 겸직금지

## （1）국회법 제 20 조 의장 • 부의장의 겸직제한，제 29 조 겸직

제 20 조（의장 • 부의장의 겸직제한）（1）의장과 부의장은 특히 법률로 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2）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 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29조（겸직）（1）의원은 정치활동 또는 겸직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있다．
1．「국가공무원법」제 2 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 2 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다만，「국가공무원 법」제 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대통령－헌법재판소재판관－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지방의회의원
3．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 함한다）의 임－직원
5．「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의 임• 직 원
6．「정당법」제 22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2）의원이 당선전부터 제 1 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 시일에 그 직에서 해직된다．
（3）「정당법」제 2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4）의원이 당선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후 1월이내에，임 기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 일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5）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 25 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 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2）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겸직의원의 수당

제 5 조（겸직의원의 수당）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 （3）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8조 겸직금지등

제 8 조（겸직금지등）（1）의장 또는 부의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 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2）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수를 받는 임－직원의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조（겸직신고）국회의원은 보수를 받고 있는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칭과 임무등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 겸직 등의 금지

제 83 조（겸직 등의 금지）（1）교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 지방자치법」 제 35 조제 1 항제 1 호，제 3 호부터 제 6 호까지에 규정된 직
2．헌법재판소재판관，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다른 교육위원회의 교육 위원
3．「사립학교법」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다만，「고등교육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제외한다．
4．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2）교육위원회 위원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래를 할 수 없으며，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5）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 겸직 등의 금지， 제 23 조 겸직의 제한

제 9 조（겸직 등의 금지）（1）교육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지방자치법」제 35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제 8 호 및 제 9 호에 규정 된 직
2．「사립학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 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교원．다만，「고등교육법」 제 2 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 육시설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제외한다．
3．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법인（이와 동등한 학 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임－직원
（2）교육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 관，교육연수－수련기관，도서관，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포함한 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 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3）제 1 항제 2 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교원이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 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4）제 1 항 및 제 2 항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시－도의회의 원에 대 해서도 적용한다．
［법률 제10046호（2010．2．26）부칙 제 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 23 조（겸직의 제한）（1）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
2．「국가공무원법」제 2 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법」제 2 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사립학교법」 제 2 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3．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 • 직원
（2）교육감이 당선 전부터 제 1 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일 전일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 （6）지방자치법 제 35 조 겸직 등 금지

제 35 조（겸직 등 금지）（1）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국회의원，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헌법재판소재판관，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국가공무원법」제 2 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 2 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 원
5．「지방공기업법」제 2 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신용협 동조합，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 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정당법」제 22 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2）「정당법」 제 22 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 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3）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 1 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 개월 이내에，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 는 취임 후 15 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 36 조제 2 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5）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 이 될 수 없다．
（6）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 하며，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7）지방자치법 제96조 겸임 등의 제한

제 96 조（겸임 등의 제한）（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1．대통령，국회의원，헌법재판소재판관，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지방 의회의원
2．「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3．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 원

5．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신용협 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 의 임직원
6．교원
7．「지방공기업법」제 2 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8．그 밖에 다른 법률이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在任）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의 조명을＂겸임 등의 제한＂으로 제시하고 있음．

## 3．공공단체 임직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7 조，시행령 제 25 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법률 제 37 조（임직원의 겸직제한）（1）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 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 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3）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시행령 제 25 조（임직원의 겸직제한）법 제 37 조제 3 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 25 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 ［참고조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공무에 대하여 부당 한 영향을 끼치거나，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정부에 불 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 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2）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16 조 겸직，시행령 제6조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제7조 겸직해제등

제 16 조（겸직）（1）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 8 조의 사업을 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에 겸 직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에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 등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제 1 항의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대학 총장이 허 가한다．

시행령 제 6 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1）법 제 1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하＂겸직교원＂이라 한다）은 대학병원 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대학병원을 설립한 국립대학（이하＂관련대학＂이라 한다）의 총장은 제5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보직된 겸직교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 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감축할 수 있다．
（3）겸직교원의 보수는 겸직교원의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4）대학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겸직해제등）원장은 겸직교원이 제 6 조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 가공무원법 제 78 조제 1 항각호의 1 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등 적절한 조 치를 요청할 수 있다．

## （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 14 조 겸직，시행령 제 9 조 겸직교원

제 14 조（겸직）（1）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 7 조에 따른 사업을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국가공무원법」제64조에도 불구하고 치과병 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2）제 1 항에 따라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 치과병원에서 보직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제 1 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련대학의 총장이 허가한다．

시행령 제 9 조（겸직교원）（1）법 제14조제 1 항에 따라 대학치과병원에 겸직하 는 교육공무원（이하＂겸직교원＂이라 한다）은 대학치과병원의 정관을 준수 하고，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대학치과병원을 설립한 국립대학（이하＂관련대학＂이라 한다）의 총장은 제4조제 2 항에 따른 처장－부장 또는 실장에 보직된 겸직교원에 대하여 「고 등교육법 시행령」제6조에도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3）겸직교원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4）대학치과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원장은 겸직교원이 제 1 항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제 78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3 조 겸직，시행령 제 2 조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등， 제3조 겸직해제

제 13 조（겸직）（1）「고등교육법」제 2 조제 1 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 무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대 학의 총장－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연구 및 진료업무 를 겸할 수 있다．
（2）제 1 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 무 및 보수，그 밖에 겸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 2 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등）（1）「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 13 조제 1 항에 따라 국립중앙의료 원의 업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겸직교원＂이라 한다）은 국립중앙의 료원의 교육，연구 및 진료업무를 수행한다．
（2）겸직교원은 겸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국립중앙의료원은 겸직교원의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 3 조（겸직해제）（1）원장은 겸직교원이 제 2 조제 2 항을 위반하거나 「국가공 무원법」제78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 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해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원장은 제 1 항에 따른 겸직해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겸직교원의 소속 대학 총장－학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 （5）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5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제 9 조의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1）공무원이 아닌 공 공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제 15 조，「광주과학기술원법」 제 14 조 및「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제 12 조의 3 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소기업의 대표 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2）제 1 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 년 이내로 한다．
（3）제 1 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 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공공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연구원의 정 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6）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 10 조（임 • 직원의 겸직제한）（1）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 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7）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 겸직

제 11 조（교직원의 배치기준 등）（1）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교직원의 배치기 준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5 조 및 제 37 조를 적용한다．
（2）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배치하여야 할 교직 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와 제 11 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의 교직원이 겸직하게 할 수 있다．
(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36 조의 6 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 제 36 조의 7 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시행령 제 36 조의 7 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

제36조의6(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 (1) 산업교육기관의 교수•직원 및 조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의 교수•직원 및 조교의 겸직 및 휴직에 관 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 1 항의 겸직 또는 휴직의 허가를 받은 산업교원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 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의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1) 대학의 교직원 및 연구기관의 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 1 항에 따라 겸직 또는 휴직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 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36조의7(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9) 재외동포재단법 제 11 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제 11 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재단의 임원(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 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0）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3 조 겸직， 시행령 제 10 조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제 13 조（겸직）（1）「고등교육법」제 2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그 밖에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소속 대학－연구기 관－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 업무를 겸 할 수 있다．
（2）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자의 직무 및 보수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 10 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1）법 제 1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자는 지방의료원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 여야 하며，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지방의료원은 겸직자의 보수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부담할 수 있다．
（11）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9 조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겸직 허용

제 19 조（국 • 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겸직 허용）（1）공무원이 아닌 국• 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제 15 조와 「광주과학기술원 법」 제 14 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은 의료연구개 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 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2）제 1 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 년 이내로 한다．
（3）제 1 항에 따라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 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국－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연 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1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 10 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 10 조(임직원의 겸직제한) (1) 재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에 종사하지 못한다.
(2) 재단의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하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1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 11 조 직원의 겸직제한

제 11 조(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총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4) 한국국제협력단법 제 11 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 11 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협력단의 임원(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직 원은 총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5) 한국마사회법 제 30 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3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임직원의 겸직제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 15 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 15 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이사장 및 직원은 사학기관의 이사나 직원을 겸 할 수 없으며,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17)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제 5 조 파견 및 겸직에 따른 기본급여 및 수당의 지급

제 5 조(파견 및 겸직에 따른 기본급여 및 수당의 지급) (1) 법 제 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으로서 국가 • 지방 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기관의 연구기관에 파견되는 연구개발요원에 대한 기본급여와 수당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받는 기관에서 지급하되, 그 기본급여와 수 당의 총액(이하 이 조에서 "보수"라 한다)은 원 소속기관에서 받는 보수보 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개발요원이 제4조제 3 항의 규정에 의 하여 휴직할 때의 휴직기간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개발요원이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하는 경우에 겸직되는 자에 대한 기본급여와 겸직으로 인하여 지급하기 부적절한 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은 본직기관이 지급하고, 겸직 기관에서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직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4) 법 제 6 조제 1 항 • 제 2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 등을 하게되 는 경우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이,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8)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13 조 직원의 겸직제한

[^1]
## 4. 공적 조합 - 특수법인 임직원의 겸직금지

(1) 공무원연금법 제 12 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 제 12 조(임직원의 겸직제한)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 • 상임이사 • 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2) 이사장 • 상임이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 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임 • 직원의 겸직제한

제3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1)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임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제 23 조(임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이사장 • 상임이사 • 상임감사는 영리를 목 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임면권자의 허가없이 다른 직 무를 겸할 수 없다.
(4) 국민연금법 제 37 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 37 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이사장 - 상임이사 - 감사 및 직원은 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 - 상임이사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 25 조 겸직금지 의무등

제25조(겸직금지 의무 등) (1)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며, 직원은 사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3) 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 24 조 겸직금지 의무 등

제 24 조(겸직금지 의무 등) (1) 기금의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기금의 임원 - 직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1) 조합장과 이사는 그 지역농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2) 지역농협의 임원은 그 지역농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3) 지역농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4)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 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5) 제 4 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조합장과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 산으로 해당 지역농협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 （8）무역보험법 제5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5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1）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사장 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9）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13 조 임원 등의 겸직 금지

제13조（임원 등의 겸직 금지）（1）교정 법인의 대표자는 그 교정법인이 운영하 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겸할 수 없다．
（2）이사는 감사나 해당 교정 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민영교 도소등의 장은 제외한다）을 겸할 수 없다．
（3）감사는 교정법인의 대표자－이사 또는 직원（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10）법률구조법 제 31 조 공무원의 겸직근무，시행령 제 9 조 겸직공무원의 수당 등

제31조（공무원의 겸직근무）법무부장관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소 속 공무원을 공단에 겸직근무（䈴職勤務）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 9 조（겸직공무원의 수당 등）（1）공단은 법 제 31 조에 따라 공단에 겸직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 32 조를 준용하여 공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3）제 1 항의 겸직공무원은 공단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를 성 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1) 별정우체국법 제 10 조의 3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제 16 조의 6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제 10 조의 3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1)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2)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 원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의 원
3.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 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제 16 조의 6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연금관리단의 임 원(비상근임원은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 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교감의 겸직

제60조(교감의 겸직)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교무과장은 법 제 30 조 제3항에 따라 그 소년원학교 교감의 직무를 겸임한다.
(1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 16 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 16 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1) 공단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 지 못한다.
(2) 이사장 • 상임이사 및 감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26 조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로 한다)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4)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임원의 겸직금지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1)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 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2)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15) 산림조합법 제41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등

제41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등) (1)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2)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3)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 원을 겸직할 수 없다.
(4) 조합의 임직원의 경업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 397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당해 조합과 정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21 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1)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상임임원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26 조에 따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 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3)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17）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11조 겸직，시행령 제13조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제 14 조 겸직해제 등

제 11 조（겸직）（1）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국가공무원법」제64조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에 겸 직할 수 있다．
（2）제 1 항에 따라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 대학병원에서 보직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제 1 항의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제 13 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1）겸직교원으로서 제 12 조제 2 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 할 수 있다．
（2）겸직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3）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겸직교원은 대학병원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며，성실히 병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4 조（겸직해제 등）원장은 겸직교원이 제 13 조제 4 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 78 조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대학교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 청할 수 있다．
（18）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 12 조 겸직，시행령 제 12 조 겸직교원 요청절차，제 13 조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제 14 조 겸직해제 등

[^2](2) 제 1 항에 따라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 치과병원에서 보직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 1 항의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시행령 제 12 조(겸직교원 요청절차) 법 제 1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서 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겸직을 요청할 때에는 당해 교육공무원 의 겸직지원서를 제출받아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13 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1) 겸직교원으로서 제 11 조제 1 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2) 겸직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3) 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겸직교원은 치과병원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치과병원 업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4 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 13 조제 4 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 78 조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업무의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서울대학교총장에 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9조 겸직 금지, 시행규칙 제6조 상임이사의 겸직승인 신청

제39조(겸직 금지) 조합의 상임이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는 다른 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상근임원이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시행규칙 제 6 조(상임이사의 겸직승인 신청) 조합의 상임이사는 법 제39조 에 따라 겸직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겸직하려는 다른 회사나 그 밖의 법인에서의 겸직업무를 처리하는 방법 을 적은 서류
2. 겸직하려는 다른 회사나 그 밖의 법인과의 관계를 적은 서류
3. 겸직하려는 다른 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서류
(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3조 임원의 겸직금지

제43조(임원의 겸직금지) (1)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2)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3) 임원은 해당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2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15 조의 2 임직원의 겸직제한등

제 15 조의 2 (임직 원의 겸직 제한 등) (1) 공사의 임 원 및 직 원은 그 직무 외에 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공사의 사장 및 감사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사의 이사 및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2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55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1)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그 지구별수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2) 지구별수협의 임원은 그 지구별수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3) 지구별수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4) 지구별수협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 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5)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해당 지구별수협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 를 할 수 없다.
(23) 신용보증기금법 제19조 겸직금지 의무 등

제19조(겸직금지 의무 등) (1) 기금의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 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기금의 임원•직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염업조합법 제 25 조 임원의 겸직금지

> 제25조(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상임이사는 조합 외의 다른 공사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

## (25) 예금자보호법 제 17 조 겸직금지의무등

제 17 조(겸직금지의무등) (1) 임 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임명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 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2) 삭제 <2002.12.26>
(3) 공사의 임원 •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 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6) 의약품 물류협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임원의 겸직금지

제40조(임원의 겸직금지) (1) 임원은 조합의 다른 직을 겸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합의 전무이사는 조합의 직외의 다른 직도 겸하지 못한다.
(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2 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 52 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1)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28)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27조 임원의 겸직금지, 시행령 제 10 조의 9 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제 27 조(임원의 겸직금지) 조합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같은 업 종의 다른 직(職)을 겸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겸 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의9(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법 제27조 본문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동종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및 관련 물품판매업
2. 제 2 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29) 정부법무공단법 제 14 조 겸직제한 등

제 14 조(겸직 제한 등) (1) 공단의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승 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공단의 이사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 사하지 못한다.
（30）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0 조 공무원의 겸직 금지， 제62조 임원의 겸직금지

제 10 조（공무원의 겸직 금지）공무원은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다만，「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선출된 공 무원은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및 중앙회의 상근 임원－직원과 중앙회장 을 제외하고는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있다．

제62조（임원의 겸직 금지）（1）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다 만，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3）상근 이사는 해당 조합 외의 다른 상근직을 겸직할 수 없다．
（31）지방공기업법 제6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 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다만，상근（常勤） 이 아닌 임 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2）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 13 조 겸직제한，제 14 조 겸직，시행령 제 11 조 겸직 교육공무원의 보수 등， 제 12 조 사립학교교원의 겸직 등，제 13 조 겸직의 해제

제 13 조（겸직제한）（1）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 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상임임원이 이사장（상임이사의 경우에 한한다）이나 국가보훈처장의 허 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 14 조（겸직）（1）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그 소속 대 학 총－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할 수 있다．
（2）제 1 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경우 그 직무와 보수 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제 1 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의료요원 겸직은 해당 대학 총－학장의 동 의를 받아 이사장이 명한다．

시행령 제 11 조（겸직 교육공무원의 보수 등）（1）이사장은 법 제 14 조에 따라 공 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하＂겸직교원＂이라 한다）을 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진료업무를 담당하 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
（2）겸직교원에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6조에도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3）겸직교원의 보수는 소속 대학에서 지급한다．
（4）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겸직교원은 공단의 정관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성실히 그 임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사립학교교원의 겸직 등）（1）이사장은 의료 진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의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하＂사립 학교교원＂이라 한다）을 본인의 동의와 소속 대학의 총－학장의 허가를 받 아 공단의 의료요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2）제 1 항에 따라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사립학교교원에 관하여는 제 11 조제 1 항 및 제 3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3 조（겸직의 해제）이사장은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겸직교원 및 사 립학교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1．제 11 조제 5 항을 위반한 경우
2．겸직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사립학교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 10 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 제 10 조(임직원의 겸직제한) (1)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2)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 우와 직 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3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1)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35) 한국수출입은행법 제 13 조 임원의 겸직 제한

제 13 조(임원의 겸직 제한) 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 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36) 한국은행법 제 20 조 겸직 등의 금지, 제 41 조 겸직제한, 제 46 조 감사의 겸직제한 등

제 20 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 원의 직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3. 기타 보수를 받는 직

제41조(겸직제한) 총재•부총재 - 부총재보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임명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 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제 46 조(감사의 겸직제한 등) 제 38 조 •제 41 조 및 제 42 조의 규정은 감사의 해 임, 겸직제한, 청렴 및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37)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 18 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 18 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1) 공사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 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공사의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 하지 못한다.
(38) 한국투자공사법 제 28 조 겸직금지의무 등

제28조(겸직금지의무 등) (1) 임원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제 13 조의 규정은 공사의 임원 -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에 대하여 이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공사의 업무"로 본다.
(39) 한국환경공단법 제 13 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제 13 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1)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공단의 상임임원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공단의 직원이 이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에 종사할 수 있다.

# 5．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 임직원의 겸직금지 

（1）금융지주회사법 제 39 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시행령 제 18 조 임원의 겸직제한 등

제39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1）금융지주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거나 당해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2）제 1 항 및 기타 금융관련법령에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당 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될 수 있다．
（3）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기관 또는 금융 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한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직원은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 원이 될 수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
2．「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4）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제 2 항 및 제 3 항 본문에 따 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 41 조의 5 의 내부통제 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다만，이해상충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 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겸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2．겸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이해상충 방지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금융위원회는 제4항 단서에 따른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6)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직원을 겸직하게 한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 회사등은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행위 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이 제41조의 5 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임 직원의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그 손해가 있을 경우
6. 고객이 거래 당시에 임직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7. 그 밖에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제4항에 따른 승인 • 보고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범위, 승인 • 보고의 방 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 18 조(임원의 겸직제한 등) (1) 법 제 3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 융지주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 3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 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2.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다만,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회사를 제외한다.
3.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회사
4.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으로부터 신용공여(제27조제11항에 따른 신용공 여를 말한다)를 받은 회사
5. 기타 금융지주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 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어 총리령이 정하는 회사
(2) 법 제 39 조제 4 항 본문에서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 41 조의 5 제 1 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이 정해져 있 을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직 원 겸직 운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가. 임직원 겸직에 따른 위험관리 -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임직원 겸직개시 • 종료절차에 관한 사항
다. 겸직 임직원에 대한 관리 • 감독에 관한 사항
라. 고객정보(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고객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임직 원이 겸직하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 에 대한 각각의 확인서를 마련할 것
가. 겸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나. 겸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다. 겸직의 목적
라. 겸직의 기간
마. 그 밖에 이해상충 방지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제 3 호에 따른 확인서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나.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라.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3)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1.18>

1. 자회사등의 직원이 해당 자회사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중 제 11 조제 1 항제 1 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 및 같은 항 제 2 호가목 및 나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되는 경우(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파견의 형태로 금융지주회사의 직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서 제 26 조제 1 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 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다만, 동일한 업종을 영 위하는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제26조제 1 항 각 호의 업무 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3.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서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로서 별표 6에 따라 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에 서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다만,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제26조제 1 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4)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금융위원회는 제 4 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 2 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 일 이내 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문서 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겸직이 개시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8>
(7) 제 3 항 및 제 6 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는 이미 승인을 받거나 보고 를 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에는 임직원 겸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 개월 내에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8) 법 제 39 조제 4 항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
4. 겸직의 목적
5. 겸직의 기간
6. 그 밖에 이해상충 방지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9)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 겸직 승인 - 보고의 방 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2）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안전 관리자의 겸직 허용

제 29 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을 2 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 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 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산업안전보건법」제 15 조에 따른 안전관리 자 1 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 15 조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 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 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도시가스사업법」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위험물 안전관리법」제 15 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 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 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 15 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 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 15 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고압 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 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 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 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도시가스사업법」제 29 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 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5．「위험물 안전관리법」제 15 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 25 조제 1 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 리자
7．「광산보안법」제 13 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 는 광산보안관리직원
8．「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제 27 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9．「전기사업법」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0．「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 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3）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 서「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27조 또는「광산보안법」제13조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보안관리 직원（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 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 각 1 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산업안전보건법」제 15 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전기사업법」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 15 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 16 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 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도시가스사업 법」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7．「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8．「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25 조제 1 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9．「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40 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 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 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 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 용한 것으로 본다．
1．「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 야 하는 환경기술인
2．「대기환경보전법」제 40 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3．「산업안전보건법」제 16 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5）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및 제 2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 른 안전관리자의 범위，제 1 항제 4 호 및 제 2 항제 5 호에 따른 취급소의 범위， 제 2 항－제 3 항에 따른 주된 영업분야 등의 기준 및 제 4 항에 따른 채용 면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 조의 2 교육 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시행령 제 11 조의 2 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 기관의 범위

제 16 조의 2 （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1）교육공무원등 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 한다）의 연구원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 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다만，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 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제 1 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 18 조제 1 항과 「협동연구개발 촉진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 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 11 조의 2 （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법 제 16 조의 2 제 1 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설립된 연구기관

2．「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제 13 조의 2 에 따른 한국원자력 의학원

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과학기술기본법」제 20 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보험업법 제 14 조 임원의 겸직 제한，시행령 제 20 조 임원의 겸직 제한

제 14 조（임원의 겸직 제한）보험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 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해당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 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3．자회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그 밖에 보험계약자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 20 조（임원의 겸직 제한）（1）법 제 14 조제 3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 호가목부터 아 목까지 및 차목에 따른 금융기관의 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법 제 14 조제 4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 10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를 말한다．
（5）부품 •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4 조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제 14 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1）교육공무원등과 정 부출연연구기관 또는 r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 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품－소재전문기업 의 대표자 또는 임 • 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이 경우 공무원에 대 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 법」 제 18 조제 1 항 및 $\Gamma$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 6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겸 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6）사립학교법 제 23 조 임원의 겸직금지

제 23 조（임원의 겸직금지）（1）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사 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다만，유치원만을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
（2）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 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다만，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3）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 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 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4）삭제＜1990．4．7＞
（7）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 21 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겸직 허용

제 21 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겸직 허용）（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도 불

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 로 겸직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제 외한다）의 교원
2．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 법」제 15 조，「광주과학기술 원법」제 14 조 및「대구경북과학기술원 법」제 12 조의 3 에 따른 교원 및 연 구원을 포함한다）
（2）제 1 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 년 이내로 한다．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기 간은「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남은 기간 을 초과할 수 있다．
（3）제 1 항에 따라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 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에 그 휴직자 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8）상호저축은행법 제 37 조의 4 임원의 겸직 제한

제 37 조의 4 （임원의 겸직 제한）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그 상호저축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 의 15 를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상호저축은 행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2．그 상호저축은행을 자회사（子會社）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 융지주회사（이하＂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3．그 상호저축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인 금융 기관의 임원이 되는 경우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5．제 23 조의 11 에 따라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9）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임원의 겸직 금지

제 13 조（임원의 겸직 금지）신용정보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常務）에 종사할 수 없다．
（10）암관리법 제 35 조 직원 겸직，시행령 제 17 조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제 18 조 겸직해제

제 35 조（직원 겸직）（1）「고등교육법」제 2 조제 1 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 육공무원은 제 30 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대학의 총장－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암센터의 암연구소 및 부속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보수 및 그 밖 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 17 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1）법 제 35 조제 1 항에 따라 국립암센 터 암연구소 및 부속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자＂라 한다）은 국립암센터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겸직자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소속 대학에서 지급한다．
（3）국립암센터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8 조（겸직 해제）（1）원장은 겸직자가 제 17 조제 1 항을 위반하거나 「국가공 무원법」제 78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 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 해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원장은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겸직자가 소속된 대학의 총 장－학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11）은행법 제 20 조 임원 등의 겸직 제한

제20조（임원 등의 겸직 제한）（1）은행의 임직원은 한국은행，다른 은행 또는「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이하＂은행지주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 37 조제 5 항에 따른 자은행（子銀行）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2．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3．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임 원 이 되는 경우
（2）은행의 상임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3．제 37 조제 2 항에 따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8조 겸직 금지，시행령 제343조 겸직금지 대상법인

제348조（겸직금지）종합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343조（겸직금지 대상법인）법 제348조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영리법인을 말한다．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금융기관
2．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회사로서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주식회사의 외 부감사에 관한 법률」제 1 조의 2 제 2 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다만，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겸직하거나 파견근 무하는 경우

나．자회사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자회 사의 임원으로 겸직하거나 파견근무하는 경우
3．「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4．해당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그와 제 337 조제 1 항 각 호의 관 계에 있는 법인
5．해당 종합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상의 신용공여를 받은 법인
6．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종 합금융회사의 상근임 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 （13）정보통신공사업법 제 40 조 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제 40 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1）정보통신기술자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2）정보통신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 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14）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 15 조 임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의 제한

제 15 조（임원 등의 겸임 또는 겸직의 제한）채권유동화회사의 임직 원은 주택 저당채권을 양도하는 금융회사등，채권관리자 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채권유동화회사의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당 기관의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 할 수 있다．

## （15）중소기업은행법 제28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중소기업은행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 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상임임원은 금융위원회 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직원은 은행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6）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 15 조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시행령 제 17 조 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

제 15 조（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다만，공무원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 능 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만 할 수 있다．
1．대학의 교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2．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제 15 조，「광주과학기술 원법」제 14 조 및「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제 12 조의 3 에 따른 교원 및 연 구원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 1 항 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2）제 1 항 각 호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교육공무원법」제 18 조제 1 항 또는 「협동연구개발 촉진법」제6조 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 17 조（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법 제 15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교원 （이하＂교원＂이라 한다）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 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이 중소기업 임원 및 직원으로 겸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복무하여야 하며，소 속기관의 장은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 및 연구원에게 겸임 또는 겸직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17) 상법 제 198 조 사원의 경업의 금지, 제 397 조 이사의 경업의 금지, 제411조 겸임금지

제198조(사원의 경업의 금지) (1)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 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2) 사원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 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 고 제 3 자의 계산으로 한것인 때에는 그 사원에 대하여 회사는 이로 인한 이 득의 양도를 청구 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3) 전항의 규정은 회사의 그 사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
(4) 제 2 항의 권리는 다른 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 른 사원의 1 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 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 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397조(경업금지) (1)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 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2) 이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 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 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 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1995. 12.29>
(3)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 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6．자격자 관련 겸직금지

(1) 공증인법 제6조 겸직 금지


#### Abstract

제 6 조（겸직 금지）임명공증인은 다른 공무（公務）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고，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 인이 될 수 없다．다만，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의 직무수행 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 1 조의 2 （용어의 뜻）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公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임명공 증인＂이라 한다）과 제 15 조의 2 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인가공 증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2）변호사법 제 38 조 겸직 제한

제38조（겸직 제한）（1）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다만，국 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 다．다만，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 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 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3）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 1 항과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14 조 겸직 금지, 시행규칙 제9조 겸직 허용 전문과목

규정 제 14 조(겸직 금지)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 밖의 다른 직무 를 겸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 9 조(겸직 허용 전문과목) 영 제 14 조 단서에 따른 전문과목은 결 핵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마취통증의학과 및 예방의학과로 한다.
(4)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겸직 금지

제 14 조(겸직 금지) 치과의사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
(5)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 14 조
겸직 금지

제 14 조(겸직 금지) 한방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 지 못한다.
(6) 세무사법 제 16 조 공무원 겸임 및 영리업무종사의 금지

제 16 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1)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3.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 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4. 학교 •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3) 세무사가 휴업하면 제 1 항과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V．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의 분석

## 1．국회법상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1）국회조직법상의 겸직제한

국회법 제 20 조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에 대하여 의원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당선된 날에 겸직이 있을 경우 그 직에서 해 직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겸직에 따른 문제를 법률상의 규정 에 따라 강제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다만，특별히 법률에서 겸직을 인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겸직이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2）국회의원

국회법 제 29 조는 국회의원에 대하여（1）「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 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2）대 통령 • 헌법재판소재판관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 지방의회의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4）정부투자 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의 임•직원，（6）「정당법」 제 22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의 직을 제외하고는 겸직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다만，공무원 중에서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일반적인 겸직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절대적 금지 규정（겸직할 수 없다）의 형식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예외적 금지규정 （제외하고 겸직할 수 있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이러한 입법형식은 금지의 범위와 내용은 유사하지만，엄밀한 해석상의 관계에 있어서 겸

직이 허용되는 직이지만 법률의 규정으로 제한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입법방법에 해당한다．이와 더불어 국회의원은 정치 적 공직이라는 점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겸직하도록 하고 있어 서 다른 지위와 신분에 비하여 겸직금지와 제한에 예외의 폭이 넓은 편이라 할 것이다．

## 2．지방자치단체 선출직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1）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법 제 96 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1）대통령，국회의원，헌 법재판소재판관，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지방의회의원，（2）「국가 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 정된 지방공무원，（3）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 는 직，（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 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신용협 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 다）의 임직원，（6）교원，（7）「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 와 지방공단의 임직원，（8）그 밖에 다른 법률이 겸임할 수 없도록 정 하는 직에 해당하는 직의 겸임을 금지하고 있다（제 1 항）．또한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재임（在任）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영리행위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의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그 지위오하 신분에 따른 겸임금지의 폭이 넓다．입법론적으로는 입 법의 통일성과 체계성이라는 점에서 다른 법령과 같이 겸임의 제한으

로 규정하기 보다는 겸직의 금지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 （2）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법 제 35 조는（1）국회의원，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헌법 재판소재판관，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3）「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 당법」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지방공기업 법」 제 2 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 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 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7）「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8）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 을 가지는 직，（9）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은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이와 더불어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범위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6항）．

이러한 금지규정과 함께 「정당법」 제 22 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하도록 하고（제2항），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 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 개월 이내에，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 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 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 고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전단）．또한 영리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지 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 며，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음

## IV.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의 분석

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 을 겸하는 경우에도 의원으로서의 청렴의 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 반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이 그 겸직의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항).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겸직금지 및 제한과 영리행위금지에 관한 사항을 매우 자세히 법률로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며, 법률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로 금 지하게 하거나 의회의장에게 그러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는 의원의 활동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태도로 판단된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국회의원에 게도 동일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은 영리행위와 관련하여 지역적 관련성 과 직접성이 있음을 이유로 사적 직위와 관련해서도 보다 엄격한 제 한을 두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최근에 공개된 서울시 의회의원의 겸직현황을 볼 때, 일 반적인 지역활동을 위한 겸직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사업체 등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단체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다수인 바, 이에 대한 활동 등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규제할 필요성은 있으며, 관 련 상임위 등에 배정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규정에 대하여 (1) 겸직의 상대적 겸직금지 및 규정의 불명확성, (2) 지위남용 금지규정의 불명 확성, (3) 조문형식의 체계성 부재, (4) 의원 당연퇴직사유의 불명확성, (5) 견직신고의 공개 및 퇴직권고의 자율성 침해가능성, (6)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의 범위에 관한 혼동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3) 일 반적으로 의원의 신분이 명예직 무보수제인 경우에는 겸직제한의 범

[^3]위가 좁은 반면, 지방의원의 신분이 유급직인 경우에는 겸직제한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것이다. 이 와 더불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의 범위는 전문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 그리고 주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면서 주민의 대표성을 보 장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4)

## (3) 교육감과 교육위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교육위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35 조에서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직과 사립학교의 교원, 학교법인의 임 • 직원 등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지방 의회의원의 겸직금지규정에 교육과 관련된 기관을 추가한 것이다. 교 육위원이 지방교육을 업무영역으로 하는 점에서 당연한 규정이라 하 겠다.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그 직을 겸할 수 있으 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 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 술대학, 각종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은 겸직이 가능하지만, 교 원이 교육위원에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교원의 직은 휴직하도록 하 고 있다. 교육위원의 업무의 공공성과 책임성에 근거하여 두 가지 업 무의 중복적 수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교육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 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포함한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제2항). 이러한 겸직금지와 영리업무제한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시•도의 회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광역의회의원으로 당선된
4) 최봉석, 전게논문, 22 면.

## IV．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의 분석

자 중 교육위원회에 속하는 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의원보다 그 겸직 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3 조에서（1）국회의원•지방 의회의원•교육의원，（2）「국가공무원법」 제 2 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과「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사립학교법」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3）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 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교육감이 겸직금지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 일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고등교육법 제 2 조의 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도 그 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교육감에 당선되는 자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보다 엄격하고 요구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 3．공무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공무원은 국가•지방공무원 공히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이는 전반적인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정이지만，예외적으 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함을 의미한 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의 범위와 한 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5 조는 금지되는 영리업무를 （1）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 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공무원이 상업，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 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 지배인 • 발기인 또는 그 밖

의 임원이 되는 것，（3）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 에 대한 투자，（4）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정하고 있다．5）이는 영리업무의 수행으로 공무원의 직무 능률 을 떨어뜨리거나，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국가의 이 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기준은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에 해당하는 경우이며，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겸직에 대한 허가의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은 영리 업무의 경우 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안되며，담당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만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감독청에 재직하는 자는 대학 의 장 또는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교무처장 • 학생처장（또는 교학처장）• 교무과장－학생과장－교장－교감 • 원장－원감 등의 직위 를 겸할 수 없다（교육공무원법 제19조）．이는 감독청과 관리자가 이중 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는 감독의 한계가 있음에 따른 겸직금지의 강화된 규정이다．이와 달리 「고등교육법」 제 14 조제 2 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 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 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의 소속 교원은 그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하겠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대학의 장은 반드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

5）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10 조（영리업무의 금지）와 제 11 조（겸직허가）；헌법재판소 공 무원규칙 제 100 조（영리업무의 금지）와 제101조（겸직허가）；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31조（영리업무의 금지）와 제232조（겸직허가）；법원공무원규칙 제88조（영리 업무의 금지）와 제89조）겸직허가）

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대상기업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 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 7 조의 5 제 1 항）．

이러한 금지와 제한관련 규정과는 달리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인정 되는 겸임의 범위와 내용을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에서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국회규 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대학 교수 등 특정직공무 원이나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 련 교육•연구기관，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그 밖의 기 관－단체의 임직원은 특수 전문 분야의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는 대학•특수전문분야•巫육•연구 등의 분야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모든 계층이 공유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는 점에서 영리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겸임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40조에서 임 용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와 각급 교육 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가 허가할 수 있다．겸임이 가능한 직군은（1）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 간，（2）연구 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3）일반직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 한다）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 1 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 의 임직원 간에 있어서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허용 된다．겸임기간은 2 년이며，필요한 경우 2 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 4. 사외이사와 겸업금지의무

상법 제 397 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 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 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의 금지로서 경업 금지를 의미하며, 회사와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임원겸직을 금 하는 겸직금지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 무의 구체적 표현에 해당하는 분야이다.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규범화한 것인 동시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적절하게 운 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토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겸직제 한의 범위를 동종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국한한 입법이유이기 도 하다.6) 판례도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 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7)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입사원이 나 이사가 되려면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면책적 사후 승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사는 현직이사에 한하며, 퇴임이사는 포함 되지 않는다. 반면에 사외이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 에서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겸직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사의 해임사유에 해당한다.
6) 김상규, 사외이사와 경업금지규정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 23 집제 3 호 $(20070,164$ 면 참조.
7) 대법원 1993.4.9. 선고92다53583판결

## 5. 공공기관 임직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업무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무원 관련 겸직금지와 제한과 같 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관련 직무 이외의 영리목 적 업무의 수행을 위한 겸직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영이업무의 범 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리업무의 금지 대상을 준용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996
-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백서, 2010
- 전교조 교원법규국, 교원의 겸직범위와 한계
- 박재창, 국회의원의 겸직에 의한 이해충돌 관리제도 개선, 한국정 책과학회보 제9권 제 3 호(2005.09).
- 김의성,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법제, 월간 법제(2008)
- 김희곤,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공법 연구 제 35 권제 3 호(2007)
- 김해룡,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자치행정 통권254호(2009년5월)
- 이청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에 관한 논의, 자치행정 통권 269호(2010년8월)
- 국회도서관, 선출직간 겸직금지에 관한 조직법, 국회도서관 입법 전자정보실, 2002
- 한재화, 한국의 국회의원 겸직제도에 관한 연구, 경남대 박사학위 논문, 1992.02.
- 김상규, 사외이사와 경업금지규정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3집 제3호(2007).
- 최대권, 지방의회의원직 겸직금지조항의 위헌여부, 서울대 법학 제 31편 3•4호(1990)
- 최봉석,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의무에 관한 법제 진단, 지방자 치법연구 제 11 권 제 2 호(통권 제 30 호), 2011. 06.



## 부록 : 겸직금지 관련 법령

2 감사원법 제9조 겸직 등의 금지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 13 조 겸직 등의 금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 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5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1조 교수요원의 겸직임용
6 공무원연금법 제 12 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7 공증인법 제6조 겸직 금지
8 공탁법 제 24 조 공무원의 겸직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임 - 직원의 겸직제한 10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0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11 교육공무원법 제19조 겸직금지
12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1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 대학교원의 사외이사겸직허가기준 등
14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1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겸직 허가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1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0 조 위원의 겸직금지
18 국가정보원법 제8조 겸직금지
19 국가정보원법 제 10 조 겸직직원
20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8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21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 16 조 회계기관의 겸직
22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 116 조 겸직의 금지
2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6조 겸직

24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제6조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25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제7조 겸직해제등
2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4조 겸직
2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9조 겸직교원
2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겸직
29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겸직 자의 직무 및 보수 등
30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겸직 해제
31 국민건강보험법 제 23 조 임원의 겸직금지
32 국민연금법 제 37 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33 국회법 제 20 조 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34 국회법 제 29 조 겸직
3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 겸직의원의 수당
36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 8 조 겸직금지등
37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9조 겸직신고
3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39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공무원의 겸 직 금지
40 군예식령 제 50 조 겸직자에 대한 의장례
41 군인복무규율 제 16 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4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에 관한 법률 제 25 조 겸직금지의무등
4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9 조 겸직등의 금지
4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겸직의 제한
45 금융지주회사법 제 39 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46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18 조 임원의 겸직제한 등

4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 립에 관한 법률 제 25 조 겸직금지 의무 등

4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 24 조 겸직금지 의무 등
4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50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5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5 공공연구 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52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임 - 직원의 겸 직제한
53 무역보험법 제5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54 문화예술진흥법 제 26 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55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13 조 임원 등의 겸직 금지

5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9조 겸직과 파견요청
57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 겸직
5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겸직금지 등
59 법률구조법 제31조 공무원의 겸직근무
60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9조 겸직공무원의 수당 등
61 법원공무원규칙 제89조 겸직허가
6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 조의 2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6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11 조의 2 연구원의 겸임 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64 변호사법 제 38 조 겸직 제한
65 별정우체국법 제 10 조의 3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66 보험업법 제 14 조 임원의 겸직 제한

67 보험업법 시행령 제20조 임원의 겸직 제한
6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0 조 교감의 겸직
6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7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 조 위원의 겸직금지

71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교육 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7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6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73 사립학교법 제 23 조 임원의 겸직금지
74 사법보좌관규칙 제31조 재보직 특례 및 겸직
75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임원의 겸직금지
76 산림조합법 제41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등
7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36 조의 7 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7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6 산업교직 원의 겸직 및 휴직

7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 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
8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 겸직 허용

8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21 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82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4 임원의 겸직 제한
83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11조 겸직
84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제 13 조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8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 12 조 겸직
86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제 12 조 겸직교원 요청절차

87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제 13 조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88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제14조 겸직해제 등
89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32조 겸직허가
9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9조 겸직 금지
9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 상임이사의 겸직승인 신청
9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3조 임원의 겸직금지
9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94 신용보증기금법 제19조 겸직금지 의무 등
9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임원의 겸직 금지
96 암관리법 제 35 조 직원 겸직
97 암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98 암관리법 제 18 조 겸직 해제
99 염업조합법 제 25 조 임원의 겸직금지
1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1 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1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80 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102 예금자보호법 제 17 조 겸직금지의무등
10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겸직금지 등
104 은행법 제 20 조 임원 등의 겸직 제한
105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제40조 임원의 겸 직금지
1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8조 겸직금지
1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43 조 겸직금지 대상법인

10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2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109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5조 겸직

110 재외동포재단법 제 11 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111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27조 임원의 겸직금지
11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 10 조의 9 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113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14 조 겸직 금지
11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 겸직 허용 전문과목

11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0조 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116 정부법무공단법 제 14 조 겸직제한 등
1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83조 겸직 등의 금지

118 조정위원규칙 제 2 조의 3 상임 조정위원의 겸직제한 등
11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 15 조 임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의 제한
120 중소기업은행법 제28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12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12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 17 조 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
1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0 조 공무원의 겸직 금지
124 제62조 임원의 겸직 금지
125 지방공기업법 제61조 임 • 직원의 겸직제한
12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 공무원 등의 교수요원 겸직임용
127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128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11 조 겸직 허가
1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 겸직 등의 금지
130 제 23 조 겸직의 제한
13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겸직
13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 조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1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 조 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134 지방자치법 제 35 조 겸직 등 금지
135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 10 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13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9 조 국•공 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겸직 허용
137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14 조 겸직 금지
138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 10 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13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 11 조 직원의 겸직제한
140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141 한국마사회법 제 30 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14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 13 조 겸직제한
143 제 14 조 겸직
14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 11 조 겸직 교육공무원의 보수 등
145 제 12 조 사립학교교원의 겸직 등
146 제 13 조 겸직의 해제
14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 15 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14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 10 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149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 11 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150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3조 임원의 겸직 제한
151 한국은행법 제 20 조 겸직 등의 금지
152 제 41 조 겸직제한
153 제 46 조 감사의 겸직제한 등
154 한국은행법 제 20 조 겸직 등의 금지
155 제41조 겸직제한
156 제 46 조 감사의 겸직제한 등

157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 18 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158 한국투자공사법 제 28 조 겸직금지의무 등
159 한국환경공단법 제 13 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160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 14 조 겸직금지
161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 101 조 겸직허가
162 헌법재판소법 제 14 조 재판관의 겸직 금지
163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제5조 파견 및 겸직에 따른 기본급여 및 수당의 지급
164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13 조 직원의 겸직 제한


[^0]:    1) 국회 법제실, 법제실무, 2011., 333면;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06., 396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음.
[^1]:    제13조(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제 12 조（겸직）（1）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국가공무원법」제64조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에 겸 직할 수 있다．

[^3]:    3) 최봉석,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의무에 관한 법제 진단, 지방자치연구 통권 제 30 호(제 11 권제 2 호), 2011.06., 18-22면 참조.
